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2. 18.(토) 조간 2023. 2. 17.(금) 11:00	배포 일시 2023. 2. 17.(금) 06:00		
담당 부서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1)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 2022년, 국민신고를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전년 대비 4배 늘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2년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행정안전부)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22년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2년 신고 건수는 1,488건으로 '21년(36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고된 쓰레기는 담당 지자체에서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수거하였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인력으로 지자체가 관리('23년 기준, 전국 1,200명)

신고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2년에는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간별 신고량, 단위 : 건> <지역별 신고량, 단위 : 건>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페어구, 투기 된 생활 쓰레기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줍깅' 참여 후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고 수거를 요청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줍깅 : '줍다'와 '달리기(조깅)'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3년부터는 해양쓰레기 신고의식을 높이고 작은 쓰레기는 직접 줍기를 활성화하는 대국민 캠페인(가칭 '알줍*')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 및 자발적 해변정화활동 확대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해안가도 더욱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신고와 자발적 해변정화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앱 해양쓰레기 메뉴를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과 해양 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등 '해양오염물질의 전(全)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1 안전신문고 앱, 해양쓰레기 신고 화면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생활불편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중 해양쓰레기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해양쓰레기

바닷가(해수욕장, 낚시터, 해변공원, 방파제 등)에 방치된 쓰레기, 해상에 부유하는 쓰레기,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와 함께 신고내용(일시, 장소, 종류,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활용은 위험하니 삼가해 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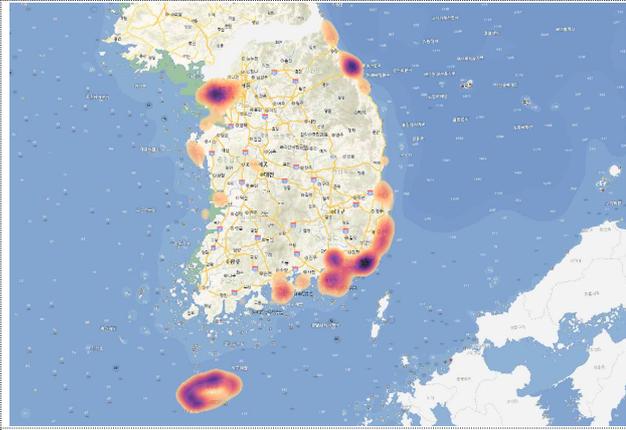
※바닷가 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공유수면법 제2조)

확인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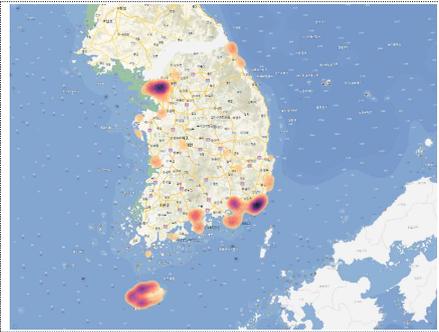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참고2 신고 유형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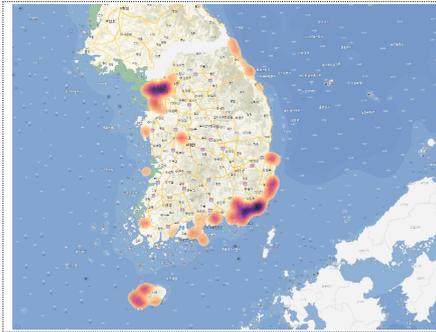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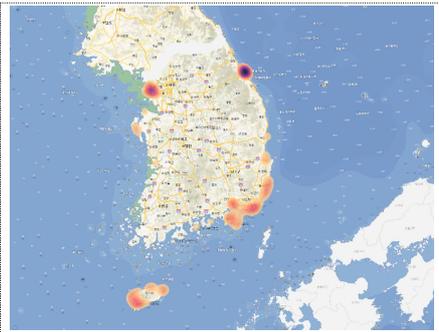
<전체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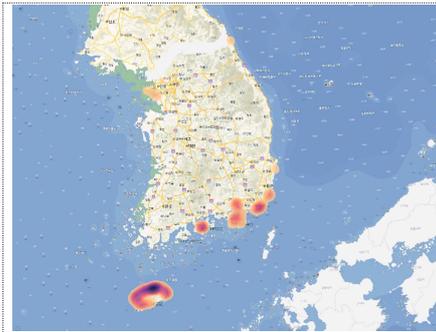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지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해이름